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11건)

거 창 군

--- 목 차 ---

순서	제출부서	의안번호	건 명	쪽수
1	행 정 과 (행 정)	2020-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서 무)	2020-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2020-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6
4	인구교육과 (청소년)	2020-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5	(도서관)	2020-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
6		202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7
7	경제교통과 (시장경제)	2020-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8
8	(지역공동체)	2020-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3
9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	2020-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6
10	(지역식품)	2020-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126
11	수도사업소 (관 리)	2020-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신설함(삭제 현행 제9조제2항, 안 제9조의2~제9조의4)

1)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변경)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2)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구성

가) 위원장 부군수,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

나)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3)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한 경우 등 서면심의 가능

나. 용어 순화함(안 제1조·제5조·제6조·제9조·제12조)

1) 행하는⇒하는, 현저한⇒뚜렷한, 요하는⇒필요한, 상신⇒제출, 등재⇒기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8.~9.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에서 행하는”을 “거창군에서 하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6조 중 “높이 선양시킨”을 “드높인”으로 “단체”를 “단체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조 제목 “(포상대장의 등재)”를 “(포상대장의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호 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등재 하여야한다.”를 “기록·관리해야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3. (생 략)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3.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관리해야한다. <삭 제>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의견18-0025 중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51

제출연월일	2020. 9. 1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구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13조)

1)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 심사

2) 중앙행정기관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제외

나. 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안 제14조)

1)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으로 구성

2) 다른 기관·단체에서 경비 부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 외부위원 신설로 현행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그 근거 규정을 변경함

다. 조례로 위임된 연가보상비 지급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1)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2) 내용: 사용하지 않은 연가(20일 초과하지 않은 범위)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3) 「지방자치법」 제23조·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1,059,69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7. 9.~7.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
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조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포함)에서 계획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연간운영계획 5.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대상 공무국외출장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③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나. 관련 조문: 제19조의4(연가계획 및 허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1,059	1,060	1,060	1,060	1,060	5,299

3. 관련 의견

연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1. 호봉제: 본봉 29,447,054천원/12월×86%×1/30×15일=1,055,187천원

2. 일반임기제: 월액 1,870천원×84%×86%×1/30×1/7×70시간×10명=4,503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28호, 2013. 1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7조제1항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민간 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2020. 3. 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참고 규칙안 주요 검토의견

□ 주요 개정 내용

○ 심사위원회에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 참여

-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국외공무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개정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참고 규칙안(=표준안) 중

제○○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자문 요청 사항

○ **규칙의 형식**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검토의견

○ 규칙 개정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대한 적절성,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권 행사를 돕기 위한 자문기관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근거 또는 규칙으로 해당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법령 또는 조례에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규칙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법령 정비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복무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서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에서의 별도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바로 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 규칙의 형식으로 심사위원회 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심사위원회에 관한 대략적인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조례에서 직접 규칙으로 위임 근거를 두게 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20-0112

질의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2. 이유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수당(제2호)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1]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일수에 대해 규정(제1항)하면서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1) 대법원 2009.9.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제4항)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4에서는** 연가 사용의 권장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그 밖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5**에서는 연가보상비에 대해 규정하면서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 외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제5항),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규정 제22조에서는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특수업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수당 등의 범위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수당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예산도 업무의 집행의 기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과 동일하게 예산의 확정 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2]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수당규정 제18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와는 달리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연가보상비의 경우 예산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규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다만,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해서 수당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별도록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당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52

제출일자	2020. 9. 16.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1) 적용: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2) 적용 배제·제한: 휴직·파견·교육훈련·정직·직위해제 중인 소속공무원

3)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군의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공중보건의사·공중방역수의사

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정함(안 제5조)

1) 구성: 기본항목, 자율항목

2) 복지점수 부여: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 여부 등 고려 점수화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정함(안 제6조)

1) 편의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의 이용권 확보

마. 후생복지사업을 정함(안 제7조)

장기근속 시 국외시찰, 직장 동호회, 장제용품,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등 지원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1) 기능: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심의

2) 구성: 9명 이내, 직급별 대표, 노조 추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구성. 필요시 민간전문가 위촉 가능

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7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 조치: 2021년도 예산 1,556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1.~9.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군수는 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③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
5.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
6. 구내식당 운영 지원
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
8.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5조·제7조

나. 비용발생 요인: 맞춤형 복제제도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후생복지사업 지원대상 인원 1,000명 정도 예상

2) 공무원 수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복지포인트	878,110	1,072,500	1,104,675	1,137,815	1,171,950	5,365,050
	단체보험	24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1,410,000
	출산축하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건강검진	90,000	90,000	92,700	95,481	98,345	466,526
	구내식당	0	6,000	6,180	6,365	6,556	25,101
	그 밖의 사업 (장제용품 등)	0	100,000	103,000	106,090	109,273	418,363

3. 관련 의견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가. 맞춤형 복지제도

1) 복지점수, 단체보험, 건강검진, 출산축하

2) 1,330천원×914명=1,215,61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0. 7. 21.] [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기 준 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9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2. 일반운영비(201목)

2-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

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

・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84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53

제출연월일	2020. 9. 16.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 될 경우 청소년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시설 사용료·감면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중복 시 청소년·청소년동호인에 우선권 부여 신설함(안 제9조제2항)

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법령불부합 소지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1) 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제2항

2) 내용: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범위를 명시

다.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사용료 추가부담 등을 정함(안 별표 2)

1) 청소년수련관: 명칭 변경

2)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지도료 삭제

3)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추가부담 신설

라.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3)

1)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명시함

2)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제24조·제31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4.~9.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별표 3)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를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사용 및 사용제한)”을 “(사용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허가)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사용허가) ①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청소년 및 청소년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제한 등) <삭 제>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거나 초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감염병질환자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가. 대강당 (한마당터)	1회 3시간	50,000원	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 퍼센트
나. 소강당 (참배움터)	1회 2시간	20,000원	
다. 강의실 (한배움터1, 2)	1회 2시간	10,000원	
라. 야외공연장	1회 2시간	20,000원	

2.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 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다목적홀	1회 2시간	20,000원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가.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1) 숙박비 (1인1일)	청소년			6,000원
	일반			9,000원
2) 강당	공연 행사		오전	70,000원
			오후	100,000원
			야간	100,000원
3) 세미나실	행사 교육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50,000원
4) 운동장	1일	경기	1회	50,000원
		경기외		100,000원
~~수련활동지도료~~			~~1회 1인 기준~~	~~4,000원~~

비고

가) 부가세는 별도임

나) 1박 기준

(1) 그날 18:00~다음날 09:00

(2) 식비,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비는 별도계산

다) 이용시간 구분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라)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1) 30분 미만: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추가 부담

(2) 30분 이상~1시간 이내: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3)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마) 강당 냉난방시설: 1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원씩 추가 부담

바)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행사기기 등의 사용료는 수련원의 내부규정에 따름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구 분		사용료		비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 입장료	어른	3,000원	2,5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	1,500원	7세~19세
2) 체험료	체험기구 당	2,000원	2,000원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구분	규 격	사용료			
		주중	주말	성수기	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	복층, 기준인원 5명, 최대인원 6명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	60,000원	80,000원	1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전기데크 (9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25,000원	30,000원	3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일반데크 (5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15,000원	20,000원	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비고

가) 장비(텐트, 코펠 등)임대는 별도 계산

나) 부가세는 별도임

다) 아동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인 요금 부과

라) 성수기: 7. 20.~8. 20.

마)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바)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1항 관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 한정)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성별영향평가 반영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행안부/국가보훈처)에 따라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 열거 권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50
15.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인의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류 직접확인, 국가·군·단체의 경우는 감면신청서 첨부로 감면

[별표 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전액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70**퍼센트**
5.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80**퍼센트**	50**퍼센트**
6.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하지 않음

~~가. 월성우주창의과학관의 반환기준은 수련시설과 같이 예약시에 한함~~

가. **반환시점은** ~~18사~~**영시**로 한다.

나.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

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 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5. 19.>[시행일 : 2020. 11. 20.] 제31조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2.] [여성가족부령 제151호, 2020. 6. 12., 일부개정]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3호, 2019. 12. 19, 일부개정]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 ~ 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 ~ 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 ~ 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2.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회	2만원
사진 원판 이용	1장	2천원

비고: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Ⅰ. 정비필요성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Ⅱ.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기타법령	의사상자법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54

제출연월일	2020. 9. 16.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등을 삭제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이 법령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삭제(현행 제6조~제14조)

1) 작은도서관 공간과 위치,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시간, 휴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2)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과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다.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지원계획: 매년 수립, 지원 대상·내용·규모 등이 포함

2) 지원기준: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라.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자료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2) 매년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

마. 행정 지원을 신설(안 제5조)

1) 자원봉사자, 순회 사서 등 지원

2)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바. 환수 신설(안 제6조)

1) 지원받은 작은도서관이 6개월 내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환수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50,45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6. 1.~6.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작은도서관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대상·내용 및 그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
2.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매년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순회사서 등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의 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나. 관련조문: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50	60	60	60	60	290

나. 비용추계 상세내역(2020년 기준 = 50백만원)

1) 순회사서 인건비: 18백만원

2)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2백만원

3) 공립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 18백만원

4) 작은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 2백만원

3. 관련 의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관련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

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

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8. 18] [법률 제24041호, 2018. 8. 13, 제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 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55

제출일자	2020. 9. 16.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 이유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시행을 위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정함(안 제3조)

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5조)

1)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

2)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의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도서, 도서상품권 지원

3) 독서관련 행사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12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6. 23.~7.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의 독서문화를 조성·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주민에게 지식정보 능력의 향상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의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활성화 과제 및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등 독서문화 시설의 개선 및 독서자료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독서문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독서활동 권장·보호·독서문화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독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홍보 추진
3. 독서 동아리·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등 독서문화 행사의 개최 및 독서운동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연계된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도로 도서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2.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3.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독서 관련 행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제5조 독서문화 활동 지원

나.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게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1) 2021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2) 독서의 달 등 행사 참가자에게 도서·도서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원, 독서실적 우수자 포상 등

4. 작 성 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 표창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勳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거창군 포상조례」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생 략)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56

제출일자	2020. 9. 17.
제 출 자	경제교통과

1. 제안 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 7. 2. 시행)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거창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의 내용을 함께 규정한다는 것을 목적에 정함(안 제1조)

나.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1) 종이형 권면금액, 상품권 기재사항 정함

2)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을 정함

다. 판매대행점과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서 내용

2)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

라.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1) 가맹점의 등록신청서 제출,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 공개

2) 가맹점 제한 업종, 가맹점 자격 요건

마. 상품권 잔액환급 비율 정함(안 제8조)

바. 상품권 이용 활성화사업 정함(안 제9조)

사. 상품권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145,000천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8.~9.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모델 전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00원권
2. 10,000원권

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면금액
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
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
4.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사용자 이용안내
6.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
2.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

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

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판매, 할인 수수료 등

나. 관련조문

1)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2)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등)

3)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496	145	145	145	145	1,076

3. 관련 의견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0년 예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수수료 등 496백만원

2. 2021년도 이후 예산

가. 상품권 할인 판매지원: 90,000천원

나. 판매 · 환전 수수료: 15,000천원

다. 상품권 제작 및 홍보비용: 26,500천원

라. 시스템 유지 · 관리: 13,500천원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박 래 만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2] [법률 제17252호, 2020. 5. 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7252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 중인 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상품권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본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2] [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제정]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목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 8건

법률위임 조문 및 내용
(제4조제4항)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 ④ 그밖에지역사랑상품권의종류,권면금액,기재사항등 지역사랑상품권발행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 정한다.
(제6조제1항)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제6조(판매대행점의협약및관리) ① 판매대행점을하고자하는자는**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제6조(판매대행점의협약및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협약을체결한판매대행점에관한정보를**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판매대행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등을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6조(판매대행점의협약및관리) ③ 판매대행점은지역사랑상품권의판매량,재고량,회수량등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제7조(가맹점의등록) ① 가맹점을하고자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가맹점 등록 거부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7조(가맹점의등록) ② 지방자치단체의장은가맹점등록을신청한자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거부할수있다. 3.이법의목적에적합하지아니한업종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7조제4항)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7조(가맹점의등록)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제2항)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

록 함
제8조(가맹점등록의취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현행「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정) 2019.04.03 조례 제24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랑상품권”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 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거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창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을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이하 “환전”이라 한다) 업무를 금융기관(이하 “판매대행점” 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액(券面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
2. 1만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가맹점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한 영업소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가맹점이 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액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3조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을 훼손하여 상품권 권면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2. 상품권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4. 위조·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환전 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환전한도는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해야 한다.

제11조(할인 판매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5퍼센트 이내

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추가 할인 판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우대한 금액의 환수) 군수는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58

제출일자	2020. 9. 16.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제안 이유

현행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만 한정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의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와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마.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함(안 제11조~제17조)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함(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제1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38백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1.~9.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하 “사회적 가치”라 한다)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정부 각 부처 및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및 사

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다.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조직 등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할 것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망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 활동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②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38	60	60	60	60	278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거창군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및 판로 확대사업 등을 실시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0년 예산: 교육 및 홍보비 38백만원

2. 2021년 이후 예산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20백만원(5년 단위)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훈련: 20백만원

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및 판로 확대사업: 20백만원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 10. 1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0. 16.>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

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폐지「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08.13 조례 제19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육성계획의 추진에 드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군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거창군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탁 또는 대행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단순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이나 연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모집 및 심사

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위반한 때 또는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폐지「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9.25 조례 제21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

한다.
3.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포함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동조합등 간의 협력, 협동조합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공동사업, 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등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등·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1조(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2조(포상)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0-66

제출일자	2020. 10. 12.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 이유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거창군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1)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나.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업무를 정함(안 제2조)

1) 설치근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2) 업무: 약초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 및 판매, 홍보 등

다. 약초유통센터 위탁 및 이용료(안 제3조)

1) 근거: 법 제51조제2항·제3항

2) 생산자단체 및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3)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78백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17.~10.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약초유통센터는 집하장, 창고, 전처리(前處理)장 및 판매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약초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④ 약초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약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및 판매
2. 약초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약초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약초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 ①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약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약초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 제2571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유지비

나. 관련 조문: 제2조(약초유통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78	70	70	70	70	358

3. 관련 의견

거창군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약초유통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20백만원

나. 약초유통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50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4.(생 략)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목과류: 밤·잣·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9조(생략)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내지 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2조(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법 제43조의3, 영 제48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을 위탁개발 하는 경우 개발대상, 사업구조, 위탁기간, 수익귀속, 위탁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6>에 따른다.

제13조~제26조 (생략)

□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약초, 항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

제13조(거창약초유통센터의 기능)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2. 약초와 항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3. 항노화 제품 개발

제14조(약초센터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571호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0-65

제출일자	2020. 10. 12.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 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거창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역할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먹거리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8조)

마. 먹거리 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9. 1.~9.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7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나. 군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 및 품질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지역 먹거리 소비증진 및 홍보
5. 군민 참여 등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6.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

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3.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소재 회사의 급식담당자 또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조리사 등
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등의 대표
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사회적 기업 대표
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마.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9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61

제출일자	2020. 9. 17.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 이유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시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여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마련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설정 등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안 제2조)

1) 공공하수도로부터 50미터 이내

⇒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 (안 제15조)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기간 등 마련(안 제28조제2항~제4항)

1)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60일 이내 통지

2)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규칙으로 위임

라. 사용료등에 대한 가산금 규정 정비(안 제29조)

마. 소멸시효를 정함(안 제30조)

1) 미납 사용료등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2) 과오납 사용료등의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 및 신설(안 별표 7)

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2)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 대상자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5조·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민법」 제16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8. 28.~9.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국민권익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2019. 4. 29.) 전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를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을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x 2/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내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③ (생 략)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제199조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29조(가산금) ① 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
제30조(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사용료등: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등: 5년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 설>⇒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행안부/국가보훈처)에 따라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 감면근거 신설
다.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의 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100퍼센트
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아.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소재 사업장	50퍼센트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비고
1. 가목에서 사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아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자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2003추13)**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385

약칭: “A,B,C~”를 약칭할 때에는 “A”로 약칭하는 것을 피하고 “A,B,C~”등의 공통요소를 모아 새로운 용어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되, “A등”으로 약칭하고 이 경우 “등”을 붙여 쓸 수 있다.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Ⅰ. 정비필요성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 · 시행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 ·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Ⅱ.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

◇ 주요내용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제32조,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2조의8 및 제60조의2).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안부 자치법규과 2019.4.)

Ⅱ. 장애등급 인용 방식에 따른 정비과제 유형별 검토

유형1 현행 규정이 개편되는 장애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 **(규정방식)** “장애등급 1~3급”, “장애등급 4~6급”과 같이 개편 후 장애정도 기준과 일치하도록 장애등급 구간을 인용한 경우

< OO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등급 1급 ~ 3급** : 0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4급 ~ 6급** : 00만원 이내

< OO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

제5조(관람료의 면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 **(개정방향)** 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이므로 **기존 장애등급에 대응되는 장애정도 기준 인용**

현 행	예 시 안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등급 1급 ~ 3급 : 0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4급 ~ 6급 : 00만원 이내	제4조(지원액) ① ----------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현 행	예 시 안
제5조(관람료의 면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제5조(관람료의 면제) ---------- ---------- ---------- ----------. 1.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